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~1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2002. 4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기초생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및 문화복지센터 인력 증원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인력증원
 -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
 - 사회복지7급 : 1명
 - 사회복지9급 : 5명
 - 문화복지센터 인력증원
 - 행정7급 1명
 - 기능9급(전기원) 1명
- 정원조정
 - 집행기관의 정원 : 545명 ⇒ 553명 (증 8)
 - 총 계 : 555명 ⇒ 563명 (증 8)

개정근거

-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(경상남도 행정 12200 ~ 10210, 2002. 2. 5)
- 신규시설 등에 대한 인력보장 승인 (경상남도 행정 12200~10375, 2002. 3. 7)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“545명”을 “553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호중 총계란의 정원 “555명”을 “563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45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0명</p> <p>총계 : <u>555명</u>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53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0명</p> <p>총계 : <u>563명</u></p>